

부산지방법원 2022. 5. 12 선고 2021가단33634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3. 31.

판 결 선 고 2022. 5. 12.

주 문

1.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위적 청구취지 :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중 1/5 재산에 관하여 2021. 6. 7.경 체결된 상속재산 분배약정을 29,199,4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9,199,4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예비적 청구취지 : 피고는 원고에게 29,199,470원과 이에 대하여 2021. 12. 6.자

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, 원고 주장의 사유들(매매대금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되거나 피고가 일부 금원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)과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, 피고와 C 등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처분대금 중 1/5을 피고가 C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배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,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우철

별지